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춘천지방법원 [redacted]지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303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redacted]법무공단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4,862,570원의 부과처분 중 740,375,5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506,650원의 부과처분 중 38,70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633,310원의 부과처분 중 48,379,7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4,862,570원의 부과처분 중 10,783,4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506,650원의 부과처분 중 563,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633,310원의 부과처분 중 70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수탁 및 그와 관련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5. 27.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통틀어 '위탁자들'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과 원고가 수탁자로서 [redacted]시 D 일대에 호텔과 부대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토지와 이 사건 호텔 등을 분양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들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며, 신탁보수로 13,00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C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76,167,3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8. 1. 5. 166,817,207,2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에 따른 취득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4,670,881,800원, 지방교육세 266,907,530원, 농어촌특별세 333,634,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redacted]도는 2018. 9. 19.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11. 7.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공사비 등 합계 25,653,015,144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43,337,730원, 지방교육세 44,086,240원, 농어촌특별세 55,107,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취득원가에서 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공사비, ② 운동기구와 주방용품, 출입통제시스템, 음향시설 등 설치비용, ③ 부가가치세, ④ 신탁보수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6.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운동기구 및 주방용품 구입비용 2,082,907,600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2020. 3. 6. 원고에게 경정된 세액을 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8. 11. 7.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즉 취득세 774,862,570원, 지방교육세 40,506,650원, 농어촌특별세 50,633,3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과세표준	세액(가산세 포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신고납부	166,817,207,229	4,670,881,800	266,907,530	333,634,410	5,271,423,740
부과처분(A) (증가분)	25,653,015,144	843,337,730	44,086,240	55,107,800	942,531,770
경정처분(B) (감액분)	2,082,907,600	68,475,160	3,579,590	4,474,490	76,529,240
이 사건 처분 (A) - (B)	23,570,107,544	774,862,570	40,506,650	50,633,310	866,002,530

(단위 : 원)

바.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과세표준을 23,570,107,544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중 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비용 2,394,870,741원, ②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 2,010,737,920원, ③ 부가가치세 5,836,482,992원, ④ 신탁보수 13,000,000,000원 합계 23,242,091,653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세액인 취득세 10,783,450원, 지방교육세 563,700원, 농어촌특별세 704,64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비용 2,394,870,741원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을 구성하는 공사비용은 그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2018. 1. 3.)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액에 한정된다. 그런데 2017. 12. 31. 당시 이 사건 호텔의 기성고 금액은 173,772,501,259원이므로, 취득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이후 발생한 공사비용인 2,394,870,741원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 2,010,737,920원

건축물과 독립된 효용을 가지는 각종 시스템 등의 설치에 지출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데,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은 이 사건 호텔의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된 효용가치가 있으므로, 그 설치비용 합계 2,010,737,920원(= 961,696,100원 + 1,049,041,820원)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설치비용 중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5,836,482,992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신탁보수 13,00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보수 13,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신탁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ⅰ)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ii)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자금관리업무 및 분양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iii)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분양보수로 책정된 7,403,505,461원은 개발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전부를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신탁보수는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3.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비용 부분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고,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그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일에 당초 예정된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되고 나머지 공사부분이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에 불과하여 그 건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그 나머지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나머지 공사비용 역시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허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허가권자로부터 임시사용을 승인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별개 또는 부수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일에 앞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의미는, 위 별개 또는 부수의 추가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임시사용승인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취득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건축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일부 남은 부분이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적인 공사로서의 의미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전체 건축공사는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건축공사의 완료를 위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위와 같이 건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면 취득자가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한 부분은 건축물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 전부이고, 위 나머지 공사 부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②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일에 건축물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공사비용 전액의 지급원인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중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나머지 공사 부분의 비용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한 비용은 물론, 그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원인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규정은 문언 자체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임시사용승인일에 건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면 위 나머지 부분의 공사비용은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③ 만약 건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남은 공사 부분이 있다고 보아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구별하여 그 기성고 금액만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다면, 납세의무자의 자의적인 해석 및 선택에 따라 조세의무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그 신축공사와 구별되는 제3자의 부대설비 가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그 비용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18. 1. 3.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8. 4. 2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2017. 12. 31. 당시 이 사건 공사 기성고 금액은 173,772,501,259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기성률은 98.64%, 공정률은 99.95%였던 사실, 2018년 1월말 당시 이 사건 공사 기성고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같은 176,167,3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기성률 및 공정률은 모두 100%였던 사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2018년 1월에 실시된 공사는 건축, 토목, 기계·전기 공종에 대한 '객실동 내·외부 마감, 잔손보기, 공용부 인테리어 마감 잔손보기, 스파동 인테리어 마감 잔손보기, 전등 및 전열기구, 출입통제장비, 수신반 연동 및 시운전, 공조실 및 기계실 마감 잔손보기 및 시운전, 토목 및 조경공사 마감 잔손보기' 공사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 1. 3.경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이 완료된 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나머지 공사들은 대부분 이미 완성된 부분의 마감과 잔손보기와 같은 마무리 공사에 불과하며 그 비용 또한 전체 공사대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공사들은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2,394,870,741원(= 176,167,372,000원 - 173,772,501,259원)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이 사건 호텔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 부분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딸린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참조).

2)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용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시스템은 개별 객실의 전력 제어, 온도 제어(냉방·난방), 출입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를 위한 제어 시스템과 개별 객실 각 부분에 부착된 제어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호텔 취득 당시부터 위 시스템의 설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호텔의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용도를 고려하면 개별 객실 관리를 위한 위 시스템은 이 사건 호텔과 하나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스템은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호텔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된 것으로 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이고, 그중 일부 설비가 분리 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호텔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시스템은 전체로서 하나의 효용을 이루고 있어 나머지 시설과 분리하면 그 부분만으로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의 효용가치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은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이 사건 호텔에 부합되거나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용 중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은 이 사건 호텔에 부합되거나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 1,049,041,820원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위 시스템은 이 사건 호텔의 편의시설, 즉 연회장, 회의실, 로비, 라운지, 사무실, 레스토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등 식음료시설, 수영장, 옥상커뮤니티광장 등에 설치된 영상·음향설비 및 무대조명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호텔의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용도를 고려하여 보면 위 편의시설에 설치된 위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은 이 사건 호텔과 하나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그러나 위 시스템은 이 사건 호텔에 전체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설비들은 대부분 스피커, 유·무선 마이크로폰, CD 플레이어, 프로젝터, 카메라, 모니터 등 별도의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시스템 중 적어도 위와 같은 물건들은 그 형상과 설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호텔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호텔에 부합되거나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을 구성하는 물건들의 품명과 수량, 단가만이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인 형상,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건들 중 어느 물건이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고, 이를 구별할 수 있더라도 그 부분의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전부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이 사건 호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다. 부가가치세 부분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고, 다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의미하고, 그 공급자가 전(前)단계 공급자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법은 제31조, 제37조 제2항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전(前)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공급자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거래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부가가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그 공급자가 전단계 공급자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 즉 공급자의 매입세액까지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거래단계의 전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부가가치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② 위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들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여기서의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취득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전단계 공급자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는 그것이 간접적으로 취득자가 지급하여야 할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취득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 물건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 받게 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취득자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취득가격에서 공제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참조).

이후 위 시행령 조항은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어 법인이 아닌 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시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어 취득자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호와 같이 취득자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는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당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C로부터 직접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2,045,303,189원을 제외하여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신탁보수 부분

1)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고, 위 간접비용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포함된다.

2)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신탁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1 기재 토지 위에 별지 2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7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후략)

제26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업무에 따른 신탁보수(별지 4)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업무보수와 분양업무보수로 구분하여 받는 것으로 하고, 신탁재산에서 받거나 또는 신탁재산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받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1. 개발업무보수는 공사비의 ()%를 적용하고, 기성고에 따라 산출하여 매 기성금 지급시 받기로 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건축비(조경공사비 포함), 설계·감리비, 인입공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축비, 조형물 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2. 분양업무보수는 분양수입금(부가가치세 제외)의 ()%를 적용하고, 지급시기는 매월말 실제분양수입금을 기준으로 익월 10일에 분양업무보수를 신탁재산에서 받기로 하며, 미분양에 따른 임대시에는 임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받기로 한다.

제33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을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탁자 B, 위탁자 겸 시공사 C, 수탁자 원고는 별지 1 기재의 '신탁토지' 위에 별지 2 기재의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탁계약 본문 제33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분담)

③ 원고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형 토지신탁 수탁 업무(건축주 지위 이전을 포함)
2.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따른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조달(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달) 및 운용
3.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명의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그 이행의무를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 또는 승계(다만, 안정적인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탁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기타 용역계약을 체결 내지 승계할 수 있음)
4. 본 사업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그 자금의 집행
5. 본 사업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6. 신탁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7. 필요시 대관청 인허가[사업계획(건축허가)변경승인 및 분양(신고)승인 포함함] 업무에 대한 지원
8.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탁자들이 요청하는 협조사항 중 원고가 수행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협조
9. 중도금대출기관 선정업무 협조

제13조(용역계약 등)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고는 용역계약(설계, 감리, 분양·홍보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의 선정은 원고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탁자들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고는 이를 고려하여 위탁자들과 협의 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역(승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신탁재산 중 현금 범위 내에서만 용역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는 그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용역비 지급 등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신탁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대금지급의무, 소송, 민원 등)는 위탁자들이 부담한다.

제17조(자금조달 및 관리·운용)

① 원고는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기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분양수입금 등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하되, (후략)

제20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일체의 자금은 위탁자들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원고가 집행한다.

2.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청약금 포함) 반환금

[별지 4] 신탁보수

1. **보수산정액** : 금일백삼십억원정(₩13,000,000,000)
2. **방법 및 시기**

가. 상기 제1항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급받기로 하되, 신탁재산에서 받을 수 없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경우에는 위탁자들에게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한다.

다. 신탁계약 본문 제26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신탁사업 수행에 따라 원고가 수취하는 신탁보수는 개발보수이며, 분양보수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9. 4. 17.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E호텔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사실확인(신탁보수의 성격) 요청에 대한 회신

2. 제목 사업과 관련하여 귀 회사에서 지급한 신탁보수 수수료는 계약서 별지 4 제다항과 같이 신탁보수는 개발보수이며, 분양보수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A 홈페이지 게재 신탁보수 기준

<분양형 신탁보수>

1) 개발보수 : 건설비(추정)의 3%

2) 분양보수 : 분양가액(추정)의 2%

(첨부) E 호텔 신탁보수에 대한 개발 및 분양보수 안분 검토

1. 신탁보수 13,000,000,000원

1) 개발보수 : 건설비(예상)의 3% 5,596,494,539원

2) 분양보수 : 분양가(예상)의 2% 7,403,505,461원

구분	개발보수	분양보수	비고
산정기준	건설비(예상)의 3%	분양가(예상)의 2%	당사 홈페이지
기준금액	180,249,701,000원	357,673,800,000원	경영위 수지분석 100%기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요율	3%	2%	
보수금액	5,407,491,030원	7,153,476,000원	합계 12,560,967,030원
비중	43.05%	56.95%	
안분금액	5,596,494,539원	7,403,505,461원	합계 13,000,000,000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로 13,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④ 원고가 작성한 취득원가명세서에는 '개발신탁보수' 계정에 13,000,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비용' 중 '분양수수료' 계정에 F과 G에 지급한 2,655,287,616원을 포함한 13,681,946,392원이 지출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보수는 그 전부가 이 사건 호텔의 신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에 필요한 신탁재산을 포함한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주체이고,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집행되므로, 이 사건 신탁보수는 원고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지급한 비용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신탁보수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개발업무 및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그런데 수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들로부터 특정 재산을 처분받아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신탁 제도의 취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야 한다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 및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보수는, 위탁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신탁재산 관리·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탁자들에 갈음하여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하는 원고가 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부터 그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조달·운용하며, 이 사건 호텔을 분양·처분하고, 이 사건 공사자금과 분양수입금 등을 포함한 사업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과 분양이고, 원고도 위 업무들에 대한 신탁보수를 개발보수와 분양보수로 구분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그와 관련된 필요비용 조달·운용 및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업자금의 관리·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업무'와, 이 사건 호텔의 분양·처분 및 그 분양수입금 등의 관리·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개발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신축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는 업무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사건 호텔 신축에 필수 불가결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 [별지 4]는, '이 사건 신탁보수는 개발보수이며, 분양보수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탁자들 중 C에 대한 2019. 4. 17.자 회신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명세서에도 이 사건 신탁보수를 '개발신탁보수' 계정에 계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위탁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개발업무에 대하여만 그 대가를 지급하되 그 금액을 13,000,000,000원으로 정하고, 분양업무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보수는 그 전부가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보수를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와 위탁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탁보수를 개발보수와 분양보수로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2019. 4. 17.자 회신에는, 원고는 통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개발보수는 건설비의 3%, 분양보수는 분양가액의 2%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기재와 함께, 이 사건 신탁보수가 위 각 비율에 따라 개발 및 분양보수로 안분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서는 원고에 대한 [redacted]도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교부된 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을 보수액의 범위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써의 원고 내부의 참고자료로 보일 뿐 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보수를 개발보수와 분양보수로 나누어 정한 다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도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분양수수료로 합계 13,681,946,392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지급처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F과 G에 지급한 2,655,287,616원은 원고가 위 회사들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보수와 별도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신탁보수에 분양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며,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나, 이러한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00 판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은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 1,049,041,82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740,375,520원, 지방교육세 40,506,650원, 농어촌특별세 38,703,790원(각 가산세 포함)이다.

결국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4,862,570원의 부과처분 중 740,375,5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506,650원의 부과처분 중 38,70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633,310원의 부과처분 중 48,379,7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세목별 구분			값[1]	근거
취득세	본세	과세표준	22,521,065,724원	지방세법 제1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23,570,107,544원 - 1,049,041,820원
		세율	0.028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정당세액	630,589,840원	= 22,521,065,724원 × 0.028
	과소신고가산세	세율	0.1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정당세액	63,058,980원	= 630,589,840원 × 0.10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	0.0003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지연일	247일	
		정당세액	46,726,700원	= 630,589,840원 × 0.0003 × 247일
	정당세액 합계		**740,375,520원**	= 630,589,840원 + 63,058,980원 + 46,726,700원
지방교육세	본세	과세표준	180,168,525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22,521,065,724원 × 0.008
		세율	0.2	
		정당세액	36,033,700원	= 180,168,525원 × 0.2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	0.0003	지방세법 제153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지연일	247일	
		정당세액	2,670,090원	= 36,033,700원 × 0.0003 × 247일
	정당세액 합계		**38,703,790원**	= 36,033,700원 + 2,670,09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과세표준	450,421,314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 22,521,065,724원 × 0.02
		세율	0.1	
		정당세액	45,042,130원	= 450,421,314원 × 0.1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	0.000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지연일	247일	
		정당세액	3,337,620원	= 45,042,130원 × 0.0003 × 247일
	정당세액 합계		**48,379,750원**	= 45,042,130원 + 3,337,620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세액의 10원 미만의 끝수와 과세표준액의 1원 미만의 끝수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4. 부가가치세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고,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7-01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끝.